

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, 제49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, 제22조(의견청취), 제14조(송달)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제목 :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6. 7. 27.(월) ~ 2026. 8. 9.(일)
3. 공시송달대상

대상자	주 소	처분 및 공고 내용	반송사유
송*나 (킨더그린어린이집 대표자)	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6길 42-1, ***호	시설폐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	주소불명

4. 게시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

- 본 공고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에 앞서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귀 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가처분을 받고도 최종 납부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[별표 9]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본 공시송달 문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10일(월)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8월 24일(월) 18:00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아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 - 청문일시 : 2026. 8. 25.(화) 15:00
 - 청문장소 : 김해시청 서관 2층 복지국 회의실
-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까지 김해시 성평등가족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6. 문 의 :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보육팀(☎055-330-3339)

2026. 7. 27.

김 해 시 장

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:	
이의신청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 등)		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(팩스번호)		
			전자우편주소		
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	☐ 지급중단	☐ 환수 처분	☐ 제재부가금 부과	☐ 가산금·체납처분	
이의신청 사유					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이의신청인

김해시장 귀하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 리 기 관 : 각 접수기관 (담당 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